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1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주 차 료 (제36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대 형	5,000원(기본 2시간) 초과 10분당 1,000원	20인승 이상
소 형	3,000원(기본 2시간) 초과 10분당 500원	20인승 미만

※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1.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가. 관용 차량 및 언론취재 차량
 - 나.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 6급의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탑승한 차량(다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한다)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